

환매조건부매도 특약 신.구약관 비교표

연 행	개 정(안)	비 고
약관명 변경 『환매조건부매도』 특약(구)하나은행	제10조(약관의 변경) 『환매조건부매도』 특약	(구)하나은행 문구 삭제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증권 매도(이하 "조건부 매도"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u>하나은행</u> (이하 "은행"이라 한다) --- 이하 생략-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증권 매도(이하 "조건부 매도"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u>(주)하나은행</u> (이하 "은행"이라 한다) --- 작동 -	(주)하나은행 문구수정
제 2 조(정의) ① 내용생략 ② 내용생략	제 2 조(정의) 1. 작동 2. 작동	문맥에 맞는 '각 호' 번호로 채번
제 15 조(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내용생략 ② 은행은 고객이 제 1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작동 ② 은행은 고객이 제 1 항의 신고나 절차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u>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표준약관(금융투자협회) 변경내용 반영 -상당한 이유 없는 은행의 책임범위 제한 (공정위 시정요청)
제 16 조(약관의 변경 등) ① <u>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u>	제 16 조(약관의 변경 등) ① <u>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u>	표준약관(금융투자협회) 변경내용 반영 - 약관변경 시 사전안내 및 예외사항 (공정위 시정요청) *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함

<p>제 18 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이 조건부 매도거래 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 18 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이 조건부 매도거래 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표준약관(금융투자협회) 변경내용 반영 - 법률용어 쉽게 풀이</p>
--	--	--